성주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4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자활사업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반영 및 기금(일몰제도)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개정에 따른 명칭변경
○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명칭변경
나. 보건복지부『자활사업지침』변경에 따른 내용반영
○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“7천만원”에서 “1억원”의 범위내로 확대함.(안제8조)
○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상환조건을 “5년거치후 5년내” 균등분할 상환조건에서 “1년거치후 4년내”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변경함.(안제8조)
다. 『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』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.
○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함.(안제10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』제26조의2,『자활사업지침』『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』제4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다. 기타사항
(1) 입법예고 : 2014. 11. 13. ~ 2014. 12. 2.(20일간)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없음.
(3)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없음.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생업자금”을 “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공공근로 및 자활근로”를 “자활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기금운용수익금

제3조제1호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”을 “법 제15조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29조제3항”을 “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영 제36조의”를 “법제2조제1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”을 “자활사업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”를 “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각각 “자활기업”으로, “자활공동체당 7천만원”을 “자활기업당 1억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”를 “자활기업은 1년거치후 4년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”을 “(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활공동체”를 “자활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활공동체가”를 “자활기업이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자활기금소관부서장”으로, “장애인자활담당”을 “자활기금소관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2조(기금의 조성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	4. 기금----------
5.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	5. 자활근로----------
6.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	6. 기금운용수익금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사업의 범위)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.	제3조(사업의 범위) ----------.
1.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	1. 자활기업이----------
2.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	2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--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5.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	5. 법 제15조제1항제7호----------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 략)	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하되,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	② ---------- 제34조제3항----------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성주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.	제5조(지원대상) ----------.

1.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	1. ---------- 법제2조제11호 ----------
2.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	2. ---------- 자활기업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5.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·기관·단체	5. 자활사업----------
제8조(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.	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---------- 자활기업---------- 자활기업당 1억원----------.
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자활기업은 1년거치후 4년내--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 자활기업이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%의 범위내에서 이를보전할 수 있다.	제9조(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 자활기업이----------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.	② ---------- 자활기업----------.
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 자활기업이-- ----------.
<신 설>	제10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.
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생 략)	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, 기금출납원은 장애인자활담당으로 한다.	② ---------- 자활기금소관부서장----------자활기금소관담당----------.